

4.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재정경제원공고 제1997-49호 1997. 6. 3

주요 골자

- 가. 공장, 물류시설의 입지가 용이하도록 도입하는 「산업촉진지구」의 입안기준을 정함.
- 나.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않는 지자체에서 토지이용확인 또는 열람시의 수수료 납부기준을 규정
- 다. 준도시지역내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20% 이내의 증설은 개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함.

개정이유
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「산업촉진지구」의 입안기준을 정하고, 토지이용확인서 수수료 규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주택회보